

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12] <개정 2025. 1. 3.>

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(제15조제3항 관련)

지 급 대 상	기 준 호 봉
1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, 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	해당 계급(직무등급) 또는 해당 계급(직무등급) 상당 10호봉
2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의2,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	가. 연구관·지도관·국가정보원 전문관: 8호봉 나. 연구사: 10호봉, 지도사 21호봉 이상: 12호봉, 지도사 20호봉 이하: 10호봉 다. 전문경력관 가군: 10호봉, 전문경력관 나군·다군: 11호봉 라. 전문군무경력관 가군: 10호봉, 전문군무경력관 나군·다군: 11호봉
3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	가. 경장·소방교 이상: 10호봉 나. 순경·소방사: 9호봉
4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	가. 교감·원감·장학관·교육연구관: 25호봉 나. 30호봉 이상: 23호봉 다.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: 21호봉 라. 19호봉 이하: 18호봉
5.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	가. 대위: 8호봉 나. 중위: 7호봉 다. 소위: 3호봉 라. 준위: 11호봉 마. 원사: 1호봉 바. 상사: 6호봉 사. 중사: 9호봉 아. 하사: 10호봉